사회복지 주간 동향(24.1.22.~1.26.)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

*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됨
  - ·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함,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가능,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듯한 설 연휴 지원

<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확인 가능 >
< 설 명절 연휴 기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 >
< 취약계층 급식 중단 없이 지원,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 >

*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 가능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23.12.15~)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

* 설 연휴 건강·보호

1. 의료공백 해소
  - (대면)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 (비대면) 연휴 기간에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 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2. 취약계층 보호
  - (노인)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 (노숙인)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 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결식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 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 지원
    ·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 안내

* 나눔문화 확산
  -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문화 확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23.12~'24.1)
  -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공공부문 중심 연말연시 소외계층 지원('23.12~'24.1)
* '24년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1.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21.3만 원 인상(4인가구 기준), 지원 대상 10만 명 확대
    · 지원 기준 : 1인가구 62만→71만 원, 4인가구 162만→183만 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 (긴급복지)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62만→183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인가구 202만→213만 원)해 지원대상 확대 (665만→701만 명)
  - (장애인연금) 총 2.2만 원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 원 수령
    · 기초급여 : 32.3만→33.5만 원, 부가급여 : 8만→9만 원

2. 생필품·서비스 지원
  - (난방비) 전국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6.8만 개소, 37만→40만 원)
  - (부모급여) 0~1세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 (0세) 70만→100만 원, (1세) 35만→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부터 지원단가 200만→300만 원으로 확대
  - (기저귀·분유)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9만 원) 및 조제분유(10만→11만 원)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보도자료 참조(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3 중앙정부 복지현안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남
  -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
  -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 가능
  -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 가능,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남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
  - (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참고 디딤씨앗통장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07~)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12세 → ('16) 12~13세 → ('18) 12~17세 → ('24) 0~17세
    * 소득기준 추이 : ('15) 생계·의료 급여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 원 → ('17) 4만 원 → ('20) 5만 원 → ('22) 10만 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금융기관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발굴,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 확대, 6년 만에 단가 7% 인상 >
< 전국 130만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

*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하여 총 103만 개로 확대,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2024년도 노인일자리 현황 >

	'23년	'24년	증감
총계	88.3만 개	103만 개	14.7만 개
공익활동형	60.8만 개	65.4만 개	4.6만 개
사회서비스형	8.5만 개	15.1만 개	6.6만 개
민간형	19만 개	22.5만 개	3.5만 개

-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하여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6.6만 개)이 가장 두드러짐,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
-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
  · (공익활동형) 월 27만 →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71.3만→ 월 76.1만 원

*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전국 약 1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
  * (공익활동형) 97만 명, (사회서비스형) 27만 명, (시장형사업단) 6만 명

붙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ㅇ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확충,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예산) 103만 개 / 2조 264억 원('24년)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명→ ('17) 47만 명 → ('23) 88.3만 명→ ('24) 103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원→ ('17) 5,231억 원→ ('23) 1조 5,400억 원→ ('24) 2조 264억 원

* (수행기관)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평균 585개 일자리 담당('22년 말)
  - 노인복지관(279개)·대한노인회(205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3개)·지자체(138개) 등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천개) '23년	사업량(천개) '24년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883	1,030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654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80	141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10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58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95	알선 수행기관에 15만 원(또는 10만 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70	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40만 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2	최대 3억 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 2024년 2개 서비스 제공기관 2,391개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 결과는 2024년 12월,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 >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 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구성
  -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

< 연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절차 >

4~9월		6~9월		10월		11월		12월
자체평가	→	기관 방문 현장평가	→	정량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만족도 조사 (이용자/인력)	→	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음,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 · 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	본인인증 수행 * 간편인증 등	⇨	개인정보 · 금융 정보 활용 동의	⇨	신청인 · 가구원 정보 입력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
  · ①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힘,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음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2.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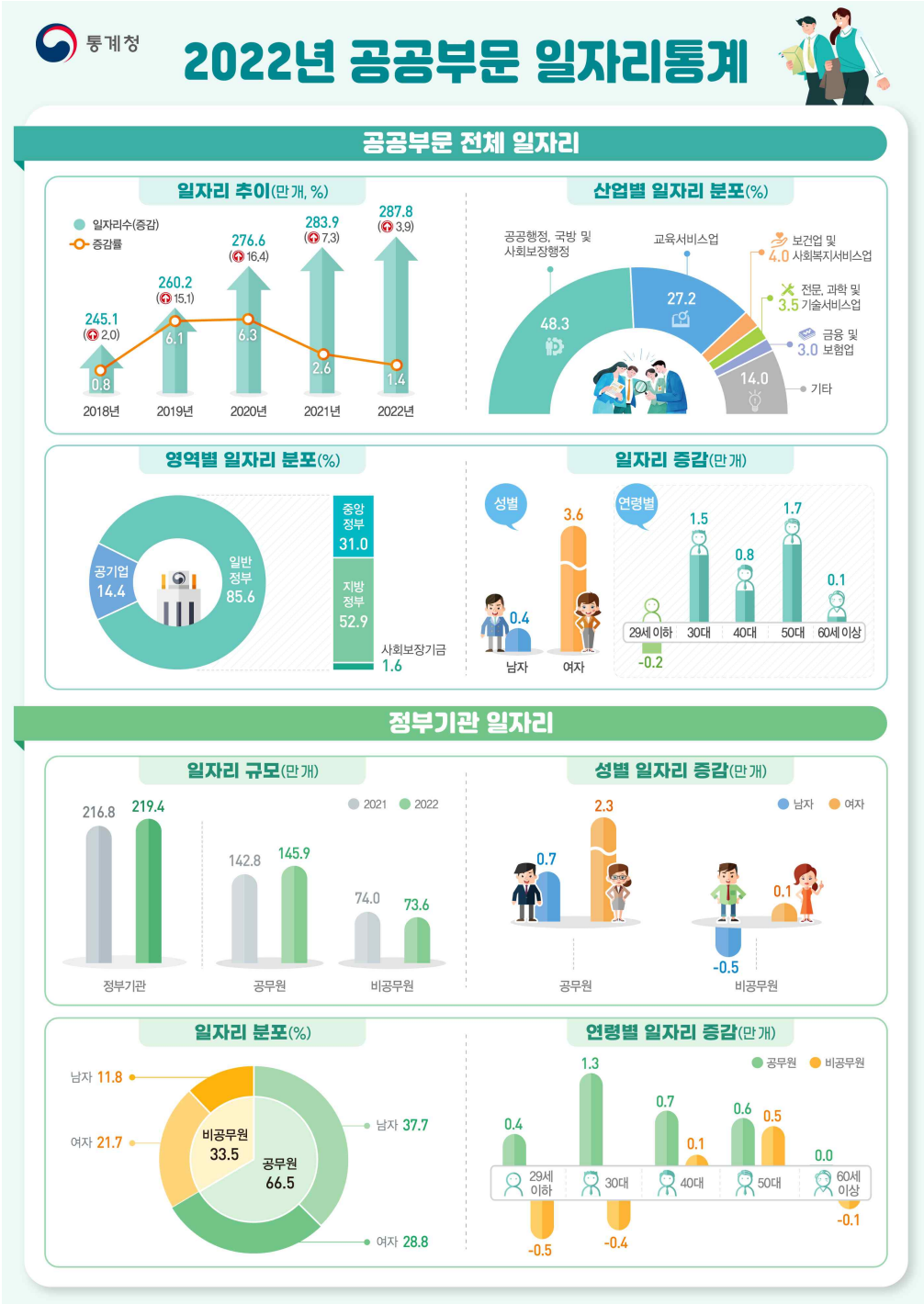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자료(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